

판매와 공급에 대한 기본 약관

1. 해석

1.1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규정들과 조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건’):

“매수인”이란 어떠한 주문이나 재간서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이나 서비스 주문은 사명, 회사 또는 기업을 말한다.

“조건”이란 합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매도된 것인지 또는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규정들과 조인들을 말한다.

“계약”이란 합은 매수인이 공급자의 재물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합의를 말한다.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명시한 당사자들이 재간서를 통하여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재물”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도 이에 포함된다.

“재간서”라 함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서로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의미한다.

“서비스”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제공하기로 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재간서에 설명되어 있다.

“공급자”는 Spectra Korea Ltd 와 모든 전자과 재간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2. **관연의 기준**: 본 조항들은 매수인의 주문서, 또는 주문서에 첨부된 문서에서 나타나든 조항이나 조인들에 항상 우선한다. 매수인의 주문서에 나타나든 조항들 중 본 조항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된 바와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러한 조항이나 조인들은 공급자가 재간서로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못 한다. 매수인이 공급자가 공급한 재물이나 재물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 받은 사실, 또는 이에 관한 송장에 따라 제공을 지할한 사실은 본 조항들의 적용을 받기로 한 의사표시로 본다. 공급자가 매수인의 의사표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항도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기로 포기하거나 그러한 매수인의 조인을 받아들일기로 한 것으로 본다.

3. **권적**: 권적이 인정하는 가격, 설정, 그리고 배달 날짜를 단호한 정보로서의 가능한 가지며, 공급자가 매수인의 주문을 받아들이고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하위 이슈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공급자는 구매할 수 있다. 매수인이 공급자에 대해 60 일내에 주문을 하지 않았던 실초이다.

4. **주문**: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주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모든 주문은 가격, 물량 그리고 상호 합의된 송부 날짜를 명시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약속이다. 공급자의 권적에 대한 담보로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물론이고, 어떠한 주문서나 서면으로 이를 수락하지 않는지 본 공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5. **가격과 공급**: 재물의 가격은 공급자 매수인에게 통한 가시이며, 서비스의 요금은 재간서에서 합의된 것이다. 제1이나 서비스의 경우 모두에 양 당사자들이 원인으로 다른 가시나 요구하는 경우, 가시나 요구하는 제품, 운송비, 보험, 수수료 관세 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재물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는 한정 범위, 부가세,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송불가능 서비스 제공으로 포함시키거나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송불 서비스는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공급자가 배송, 포장, 보험,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6. 발송과 배달

6.1 공급자는 매수인의 주소 또는 당사자에 의해 합의에 의하여 인코덱스 2000에서 명시된 인도조건으로 한다. 공급자가 인용한 모든 배달 날짜는 대략적인 것일 뿐이며 배송의 지연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배달의 시기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는다.

6.2 공급자는 재물을 발송하여 배달할 권리를 보유하고, 본항에서 배상을 이행할 각각의 재물에 대하여 개별적인 송장을 발송할 수 있다. 본항이 본항이나 이슈이치에 하거나 공급자가 본항에서 배상을 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본항에서 배상되었거나 할 본항의 배달이 어떠한 이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7. **위험부담과 소유권의 이전**: 재물, 대량 배상과 재물의 발송, 또는 훼손에 대한 위험 부담은 제 6 조에 규정된 배달의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재물, 발송, 또는 잘못된 배송에 관한 청구는 운반비에 대하여 책임수도하여 하며 배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0 일 이내에 공급자에 대해 의뢰된 의사조치나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물을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재물의 수량은 공급자가 제 11 조의 의뢰된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8. 서비스:

8.1 공급자는 본 규정과 관련 재간서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2 매수인은 공급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또는 달리 합의된 경우에 있어서 공급자에게 그와 관련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되고, 이러한 정보나 자료를 계속하여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합의의 조건:

9.1 재물의 송부는 각각 모두 하나의 거래를 구성할 것이고 매수인은 배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송장을 받게 될 것이다.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에 대해 미리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의 기간은 송장이 발부된 날짜 이후 30 일이다.

9.2 계약에 따라 청구되는 모든 금액은 매수인이 어떠한 공제, 보류, 상회 또는 상계의 청구 없이 지불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제, 보류, 상회 또는 상계의 사항은 그것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이상 계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불법행위에 기한한 것인데, 법정 의무에 위반한 것이든 공금이다.

9.3 공급자는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어떤 한 지점에 매수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담보의 피모로서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9.4 단일 매수인이 반제기에 대금의 결제할 수 못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에게 허락되는 다른 권리와 다른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다음 중의 하나의 행위를 포함한다) 매수인이 계약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재물의 추가적인 송장을 지면 또는 취소하고 그 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 계약된 다른 서비스의 추가적인 제공을 중단할 수있고 취소 수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ii) 계약을 승인하고 매수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iii) 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결제되지 않은 대금에 대하여 시효연장 청구에 의지보다 4% 인센티브 이자(한월이 내리까지 전과 모두)를 대금의 결제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자는 매일 정정되어야 한다.

10. 재물:

10.1 공급자는 재물의 성능에 부합적인 사양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물의 상황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정부 부흥에 의하여 설정된 규정이나 수신회이 있는 사항에 의하여, 또는 특정 물질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속도가 일정한 물질을 대신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10.2 공급자의 카탈로그, 제품 및 가요, 광고 자료 또는 문헌이 제공되는 재물의 설명이나 기타 모든 대금의 설명이나 대략적인 내용일 뿐이며, 매수인에게 대략적인 정보나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정보는 공급자에 의한 보증 또는 representations 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다.

11. 보증:

11.1 공급자는 재물이 매수인에게 배달된 날로부터 1 년 동안은 재물나 가공상의 문제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재물의 유효제 13 조에서 규정이 방해 받거나 오류가 없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 오류들이 수정될 것이라고 보증하지도 않는다. 매수인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러한 사용법이 법률에 따른 사용법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다.

11.2 공급자는 재간서에 따른 서비스 집행할 장의 의무를 능숙하게 이행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11.3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서 주장하고, 그러한 재물이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또는 보증을 받지 지급하고 배달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공급자에게 합송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검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재물이 제조나 가공에 있어 하자 있다고 판단하면 공급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재물을 보수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배상료를 미리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재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11.4 공급자는 그러한 재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한 재물의 보수나 교체는 보증의 기간을 연장시키지 아니한다. 이 보증의 기간은 1 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오류라고 주장되는 하자들만을 수할 수 있는 것이었거나 배달의 시점에 이미 잠재하고 있었다고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5 서비스 중 제 11 조 2항에 부합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 있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던, 해당 서비스는 공급자가 11 조 3항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로 대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대체 이다 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공급자가 서비스의 불완전한 이행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문헌의 서비스에 관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6 다음의 경우에 매수자가 재물이나 재물의 완성에 대한 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매수인이 제 11 조 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통행률 하에 그러한 재물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ii) 하자고 고장 등 이 사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일 때, (iii) 하자고 매수인이 제공되는 재도, 상회 또는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다른 재간서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기타 공급자가 합리적 재량권 보유이나 불복이 아닌 다른 불합리하게 하자 발생하였던 때, (iv) 하자고 재적 의미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 때 그 사정이 시, 응용,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용, 관리, 개조, 부적절한 설치,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유지, 부적절한 시험 등인지는 불지 않는다. (v) 하자고 재물을 공급자가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다른 재물이나 물질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 (vi) 하자고 고장 등이 매수인이 제1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되지 않은 허가나 수정을 가하거나, 제1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공급자가 서면으로 제공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일 때, 그리고 (vii) 하자고 고장이 매수인이 그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부과되는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11.7 매수인이 제1이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어떠한 금액의 어떠한 비율이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보증과 구제 방법 등은 공급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11.8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은 특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모든 명시적, 묵시적인 보증, 조건과 규정을 대신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한 재물의 책임보증 또는 적정성 보증 모두 포함된다. 본 절(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보증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지는 유일한 책임과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구제 방법 등은 제 1 조 3항과 제 11 조 5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뿐만이다.

12. 책임:

12.1 (i) 가(가), (ii)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iii) 공급자의 동의 또는 종용 실 또는 (iv) 매수인 이유에서 비롯되거나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책임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 조항 이외에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미연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2.2 공급자는 그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인身的 사건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물질적 재산에 대하여 일한 손해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 고액한정까지 책임을 지다. 조인을 명확하게 하지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훼손, 손실 또는 손상은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손해가 아니다.

12.3 제 12 조 1항과 2항에 따라, 재물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재물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재물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의도 또는 의의,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발생하였는 지에 관계 없이 발생한 것인데,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든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한다.

12.4 제 12 조 1항과 2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서비스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재물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인데,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든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한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관하여는 이러한 한 해에도 그 해에 매수인이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125%를 넘지 못한다.

12.5 제 12 조 1항에 따라, 공급자는 그것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간에 매수인에 대하여 이득의 손실, 수입의 손실, 사용의 손실, 영업영역의 손실, 세입의 손실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거나 다대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가 예측 가능하였는 지 여부, 당사자가 예상하였는 지 여부,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발생하였는 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였는지, 다른 사정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물론하고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12.6 계약에 의하여,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은 그 인인이 되는 (i) 제물이 배달된 날 또는 (ii)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급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기한 이후에 행사된 청구권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재물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프로그래밍 루틴,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서, 그리고 매수인이 제작한 모든 복제본(이를 전부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라 칭한다’)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항상 보유하며, 매수인에게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14. 지적재산권:

14.1 어떠한 재물도 인도는 본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조건이나 다른 어떠한 계약의 조항도 매수인에게 어떤 재물이나 서비스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이전 또는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 조건제 13 조와 제 14 조 3항이 적용된다.

14.2 매수인은 공급자가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이라 할때에, 제작, 사용, 또는 개발된 모든 제작물과 인도 가능한 실제적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그리고 지적 재산권은 세계 어디에서든 제작자나 인코덱스 또는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공급자가 계속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서비스, 문서, 자료, 그림, 설계서, 물건, 스케치, 보고서, 발명품, 프로그램, 수정, 설계, 도구, 소프트웨어 다른 모든 관련된 물품에 관한 권리의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매수인은 본 계약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가 가지지 못 한다.

14.3 공급자는 매수인이 서비스의 특허인 이득을 사용하고 특허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매수인이 그러한 ‘작업’을 필요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14.4 단일 매수인에 대하여 제1이나 서비스가 한쪽에 존재하고 있는 제 3자의 특허, 저작권 또는 다른 권리를 획득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는 매수인 그 청구에 의하여 배상하게 되거나, 그 소송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지불할것이나 지불하기로 약속할 수도 손해와 비용을 배상한다. 이러한 다중의 사항들이 존재 조건이 된다: (i) 그러한 소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협상을 공급자가 관장되 지만한다; (ii) 매수인이 절차나 협상에 필요한 도움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iii) 확정적인 배상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매수인은 그러한 배상금의 상환을 관장되거나 배상을 하여야는 안하고, 공급자의 승낙 없이도 그러한 절차를 종료 시키는 안 된다; (iv) 매수인은 존재하는 권리의 침해 등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충이나 다른 동등 혹은 더이상할 용어는 안한다. 그러나 보충이나 담보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충이나 담보를 통하여 매수인이 회복할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v) 존재하는 소송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거나 매수인 소송의 의하여 매수인인 이러한 용어를 유보하여야는 안 한다;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기로 할때면 손해나 비용의 배상은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본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vi)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본 조항제 제 14 조 4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비용 또는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항에는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타당한 권한을 인정하는 대대적인, 또는 개관된 법률상의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14.5 다음의 사유로 공급자로부터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는 공급자에게 제 14 조 4항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i) 존재하는 재물은 서비스로 인하여 공급자가 직접 행하였거나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은 첩보나 수정이 이루어진 사항; (ii) 모든 명세 또는 설명서 등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정보; (iii) 공급자 재물에 필요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매수인의 요구나 설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iv) 공급자가 제작하거나 개조하지 않은 장비와의 결합 또는 그러한 장비에서의 추가; 또는 (v) 공급자가 미리 설정한 범위나 서면으로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

14.6 본 조항, 제 14 조는 제 12 조 1항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공급자의 책임의 전부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제 2 조 3항, 제 12 조 4항, 그리고 제 12 조 5항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의 적용을 받는다.

15. **불가항적**: 본 계약 조건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와 그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이윤나 사정으로 인하여 제1이나 서비스 제공된 방지, 지연 또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만일 그러한 불가항적인 사정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모든 계약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의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다른 재고를 그의 고객들 사이에 일률로 분할할 수 있다.

16. **기밀정보**: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알게 된 기밀 정보나 공개적인 지식이 되거나(본 조항의 위반 이외의 원인으로) 관한 정보는 기밀의 명칭에 의하여 공개되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거나, 타방 정보 또는 제 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17. 취소, 연기와 계약의 종료

17.1 공급자가 수락한 재물 주문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통지공급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매수인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또는 중재되거나 수정된 주문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요금 또는 지출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한 주문의 취소나 연기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손해 비용, 요금 또는 지출을 배상하여야 한다.

17.2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관련 재간서에서 명시한 시점 날짜에 시작되어야 하며, 제 17 조 3항과 제 17 조 4항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이상은 첫 재간서에 처음 명시된 기간 동안 유지되고, 갱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종료 계획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제 17 조 3항에서 제 17 조 4항에 따라 계약을 종료 시키기 전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것이 계속 유지된다.

17.3 양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90 일 이전에 종료의 통지제 함으로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고, 이에 제 17 조 3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4 서비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계약 위반을 저지르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통지서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 위반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 위반을 중단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제 함을 하고 즉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재물을 보유하고 있을 통지제 함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하위되거나 본 계약 조항에 따른 권리의 위양행 행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물을 보유하고 있을 통지제 함은 본 계약 조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또는 그와 다른 타방이나 재물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의 사본을 보존하여야는 안 된다.

17.5 본 조항들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종료 날짜에 이미 양 당사자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된 적이 아니한다.

17.6 매수인의 지불불능: 만일, (i) 매수인이 지불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그의 자산의 일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일정한 재산 관리인, administrative 재산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 그의 재산이 모두 타당이나, 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일정한 재산 관리인, 그의 재산이나 재물을 매각하는 명령이 발하거나(지나치게) 통발을 갖기 위한 협정이 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회생 제도), 적용 가능할 다른 법적 절차에 따른 유사한 행위로 진행되었을 때 또는 (ii) 매수인이 영업을 중지하거나 휴지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재물을 제1이나 서비스에 제공된 것인 한도 내에서 ‘책임’도 지게 없이 없이 다른 이상에 재물이나 서비스 공급을 중지할 수 있고, 재금지되었거나 결제되지 않은 서비스로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를 금액이나 요금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에 절정하는 다른 내역이 있었으며 불구하고 즉시 반제에 있게 되어 청구 가능하며, 본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서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다른 어떤 권리나 구제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기타:

19.1 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은 한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적 청구는 소송을 집행하기 전에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재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절차를 시작하고 실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시작통지’). 중재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중재에 일한다. 양 당사자 널리 정한 바가 없으면 중재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이나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본지 중재자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노력할 위하여 하고 중재 절차가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이나 다른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청구의 해결을 대한민국 법원의 배타적인 관할에 맡기기로 동의하고 이러한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나, 공급자는 매수인에 소송 관할권 있는 법원 어디에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 19 조 1항에 규정된 대금 내용도 각 당사자가 배타적인 금지명령을 받거나, 기타 다른 자정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것임을 목적으로 법원에 의뢰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9.2 매수인은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것을 그러한 권한의 포기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이후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나 집행은 금지되지 않는다.

19.3 만일 본 계약 조항의 조항이나 조항의 일부가 관할 있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의 영향은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19.4 본 계약은 사내 서면으로 공급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권리를 양도, 이전, 갱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의무를 다른 이로 하여금 대리하게 구성하는 안된다.

19.5 본 계약 조건과 관련 계약이 행사 사안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이의의 정의를 구성하며, 그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이해 또는 협의를 대신하며, 이 때 이해 또는 협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지는 이를 정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대한 당사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이전에 하위된 말이나 쓰인 글로써는 어떠한 의사조치, 약속 또는 보증을 할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공급자에 대하여 행한 지침을 신중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는 어떠한 구제 방법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침이 사기 행위로서 이루어졌거나 공급자가 그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관해서는 배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예외,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 방법들은 본 계약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위반에 대한 것 뿐이다. 본 조항이 사항에 관한 허위 의사조치 또는 제 12 조의 적용을 받는다.

19.6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분할 및 본 조항이 서명하여야 한다.

본 계약 조건과 발송되어 모든 통지는 전자에 나타나 는 각 당사자의 주소나 수정된 발송은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서로 때때로 지칭할 수 있는 주소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직접 전택하였으면 통지 시에, 유선으로 발송하였으면 발송 후 2일이 뒤, 팩스로 보낸 경우에는 전송 확인 시에 초과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